

#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변경사항(안) 사전예고

◆ 본 변경사항 안내는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제5조(사전예고)에 따른 사전예고이며, 실제 공고 시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1.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개정

### □ 사업선정 시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국비 차등 지원

- 신재생에너지의 보편적 지원과 평가 결과에 따른 차별성 부여를 위한 5개 등급별(A~E) 국비 지원 차등화

#### < 등급별 국비 지원 범위(안) >

A등급 (10%)	B등급 (20%)	C등급 (40%)	D등급 (20%)	E등급 (10%)
국비 신청액 100% 이내	국비 신청액 70% 이내	국비 신청액 50% 이내	국비 신청액 30% 이내	국비 신청액 20% 이내

- \* 등급별 비율 및 등급 내 국비 지원 비율과 한도는 사업신청 규모, 확정 예산액에 따라 조정 가능
- \* (예시) 국비 15억 신청 기준, A↔E 등급 국비 최대 지원액 차등폭은 12억원 수준
- \*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제36조 제5항에 따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

### □ 사업신청 방법 변경(공문 및 온라인 → 온라인 제출로 일원화)

-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제출(첨부서류 등록 등)이 완료된 신청분만 인정
- 주관기관의 융복합지원사업 사업신청서(직인 포함) 추가 제출(별도양식 안내)

### □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비중 조정 (40:60 → 50:50)

- 계량 부문 평가 비중 확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 강화
- \* 비계량 평가(사업필요성, 민원·인허가사항) 60점에서 50점으로 축소

계량 평가항목	배점	계량 평가항목	배점
① 시공능력 (기술인력, 신규고용 등)	12 → 15(+3)	② 모니터링 능력 (REMS 연동률)	3 (-)
③ 사업수행능력 (설치확인 적기신청 등)	11 → 22(+11)	④ 지방비자부담 (지방비자부담 비율)	4 → 6(+2)
⑤ 예산집행률 (보조금 수령비율)	5 → 4(Δ1)	합 계	50

### □ 정부 예산 지원한도 조정(국비 20억 → 국비 15억)

-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국고보조금 신청 제한

기존	개정
○ 정부예산을 과도하게 초과(총 사업비 40억(국비 20억))하여 신청한 컨소시엄의 경우 당해연도 평가제외 또는 후순위 평가 예정	○ 정부예산을 과도하게 초과(국비 15억)하여 신청한 컨소시엄의 경우 당해연도 평가제외

□ 정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충족 지자체 우대(별도 가점 5점)

- 정부 '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' 준수 지자체 우대를 위한 인센티브 별도 부여

기존(계량 가점 3점)		개정(별도 가점 5점)						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례에 이격거리 규제 없을 시 : 가점 3점</li> <li>· 조례가 항목(a)~(b) 중 1개 이상 미충족할 시 : 가점 없음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례 內 규제 없을 시 : <b>가점 5점</b></li> <li>· 조례 內 (a)~(b)를 모두 충족 : <b>가점 4점</b></li> <li>· 조례 內 (a)~(b) 중 1개 이상 충족시 : <b>가점 3점</b></li> <li>· 조례 內 (a)~(b) 중 각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, 주거 200m 또는 도로 100m 이내로 완화시 : <b>가점 2점</b>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이격거리 규제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태양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주거지역 100m이내</td> <td>도로 없음</td> </tr> <tr> <td>항목</td> <td>(a)</td> <td>(b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분	이격거리 규제		태양광			주거지역 100m이내	도로 없음	항목	(a)	(b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항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태양광 이격거리</td> <td>주거지역 100m이내</td> <td>(a)</td> </tr> <tr> <td>도로 없음</td> <td>(b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평가 최종단계에서 별도 가점 부여 (평가점수 합계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)</p>		구분	항목		태양광 이격거리	주거지역 100m이내	(a)	도로 없음	(b)
구분	이격거리 규제																					
	태양광																					
	주거지역 100m이내	도로 없음																				
항목	(a)	(b)																				
구분	항목																					
태양광 이격거리	주거지역 100m이내	(a)																				
	도로 없음	(b)																				

□ (계량) 사업 수행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 조정(총 11점 → 총 22점)

- 컨소시엄의 사업관리 강화와 기준을 명확화한 평가 기준을 마련

기존(배점 11점)				개정(배점 22점)			
평가 부문	평가항목	배점	평가기준	평가 부문	평가항목	배점	평가기준
사업 수행능력 (11)	사업 변경률	6	'22년 1년 동안 사업변경 신청 비율	사업 수행능력 (22)	사업 변경률	7	'23년 1년 동안 사업변경 신청 비율
	사업 완료율 <항목 조정>	5	이전 2년간 사업 완료 평가		설치 확인 신청	7	이전 3년간 설치확인 신청 실적 평가
	<항목 신설>	-	-		설치계획서 제출	4	설치계획서 제출 실적 평가
	<항목 조정>	-	-		에너지원별 균형	4	"비태양광" 설비 비율

① (사업 변경 신청 비율) 사업 지연 원인과 관리 부실에 대한 배점 상향 (배점 7점)

구분	개정(배점 7점)				
기존 (배점 6점)	○ 2022년 1년동안 해당 지역의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비율(총점 6점)				
	배점	0	2	4	6
	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개소 대비 사업변경 신청 개소 비율(%)	50초과	30초과~50이하	10초과~30이하	10이하
	* 신규 컨소시엄 또는 '22년 융복합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은 평균점수 적용 * (대표)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, 기관 기준 변경률과 지역 기준 변경률 중 큰 값 적용				
개정 (배점 7점)	○ 2023년 1년동안 해당 지역의 기존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변경 신청 비율(총점 7점)				
	배점	0	3	5	7
	컨소시엄 해당 기초지자체 전체 개소 대비 사업변경 신청 개소 비율(%)	50초과	30초과~50이하	10초과~30이하	10이하
	* 신규 컨소시엄 또는 '23년 융복합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은 평균점수 적용 * (대표)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, 지역 기준 변경률로 적용				

② (설치확인 적기 신청) 기존 사업 완료율을 설치확인 적기 신청 항목으로 변경하고 공문 제출 방식으로 평가 기준 명확화 (배점 7점)

구분	개정(배점 7점)				
기존(배점 5점)	○ 이전 2년간('21~'22년) 사업 당해연도 완료 (총점 5점)				
	배점	미완료	1년 완료	2년 완료 (21년, 22년)	
	직전 2개 년도 사업 완료 (‘21년, ‘22년 사업)	0점	3점	5점	
개정(배점 7점)	○ 이전 3년간('21~'23년) 설치확인 미신청 사업 수 (총점 7점)				
	배점	0	3	5	7
	직전 3개 년도 설치확인 미신청 (‘21년, ‘22년, ‘23년 사업)	3	2	1	0
*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정산보고서 또는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기준, 신규는 평균값 적용 * '21년 사업은 '22년 사업접수 마감일, '22년 사업은 '23년 사업접수 마감일 기준 * 평가 고득점을 위해 설치확인 신청 남용 등 부정한 방법 확인 시 '25년도 사업참여 제한 * '24.6월 이내 <b>설치확인 신청서 공문 제출 기준</b> , 신규는 <b>평균점수</b> 적용(지역 기준 적용) * '24.1월부터 <b>컨소시엄 준 개소에 대한 설치확인 신청 공문 제출 필수</b> ('24.1월 이전 설치확인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, 준개소 최종 완료일 기준으로 적용) * 평가 고득점을 위해 설치확인 신청 남용 등 부정한 방법 확인 시 '26년도 사업참여 제한					

③ (설치계획서 적기 제출) 확정된 사업 대상지 설치계획서 제출 지연에 대해 사업관리 강화(사업지연 방지)를 위한 평가항목 도입 (배점 4점)

구분	신설(배점 4점)			
배점 4점	○ 2024년 설치계획서 적기 제출 (총점 4점)			
	배점	0	2	4
	2024년 설치계획서 신재생 BPM 시스템 등록	이 외	'24.6월 이내	'24.5월 이내
* 평가 고득점을 위해 설치계획서 신청 남용 등 부정한 방법 확인 시 '26년도 사업참여 제한 * <b>신규 컨소시엄 또는 '24년 융복합사업 미추진 컨소시엄은 평균점수 적용</b>				

④ (에너지원) 에너지원별 균형보급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 조정(배점 4점)

구분	개정(배점 4점)					
기존 (감점 0 ~ -2)	구분	내 용		배 점		
		감점	비태양광(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) 설치 비율(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)이 20% 초과		0	
			비태양광(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) 설치 비율(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)이 10% ~ 20%		-1	
	비태양광(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) 설치 비율(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)이 10% 미만		-2			
개정 (배점 4점)	배점	0	2	4		
	비태양광(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) 설치 비율(신재생설비의 에너지환산계수 기준) %	15미만	15이상 ~25이하	25초과		

□ (계량) 지방비 자부담 비율 평가 지표 전환(배점 6점)

- 기존 민간자부담 평가를 주관기관(지자체 등) 주도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'총 사업비 중 지방비 자부담비율' 지표로 전환

기존(배점 4점)					개정(배점 6점)				
* 총사업비 중 민간자부담 비율					* 총사업비 중 지방비자부담 비율				
배점	1	2	3	4	배점	1	2	4	6
비율(%)	10미만	10이상 20미만	20이상 25미만	25이상	비율(%)	30미만	30이상 35미만	35이상 40미만	40이상

□ (가점) BIPV 활성화를 위한 가점 상향 (가점 0~3점)

구분	개정(가점 0~3)			
기존 (가점 0 ~ 2)	구분	내 용		배 점
	가점	사업 중 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50kW 이상		2
		사업 중 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10kW 이상		1
		그 외		0
개정 (가점 0 ~ 3)	구분	내 용		배 점
	가점	사업 중 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50kW 이상		3
		사업 중 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25kW 이상		2
		사업 중 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10kW 이상		1
		그 외		0

□ (가점)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포함한 사업 우대(가점 최대 3점)

- 산업단지 내 태양광 50kW 이상 설치 시 (가점 2점)
  - '23년 KEEP+ 선도(중소)기업 지정 사업장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기업 (추가 가점 1점)
  - \* 산업단지 입주증빙 서류, KEEP+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,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제출

□ (가점)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저탄소 모듈 사용 시 가점 부여 (가점 0~3점)

- 산업통상자원부 「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」에 따른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 모델 사용 시 인센티브 부여

구분	신설 (가점 0~3)			
신설 (가점 0 ~ 3)	○ 태양광 합계 설치용량 비율에 따른 평가			
	배점	0	2	3
	저탄소 인증 모듈 사용 비율(%)	그 외	30이상 ~50미만	50이상
* “저탄소 모듈”은 「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(산업부고시)」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670kg·CO2-eq/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에 한함				
* 단일 설치 개소 일반/저탄소 모듈 복합 형태의 설치 불가				

□ (가점) 취약부문 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 우대(가점 1점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포함 시 인센티브 부여
- 보건복지부 ‘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’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

□ (가점) 사업비 정산 현황 가점 항목으로 전환(가점 0~2점)

- 기존 사업비 정산현황 평가(5점)를 가점으로 전환하고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

구분	개정(가점 0 ~ 2)						
기존 (배점 5점)	○ 既추진사업(~2022) 사업비 정산(반납) 미완료 사업수						
	배점	0	1	2	3	4	5
	미정산 사업 (개)	5이상	4	3	2	1	0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, '23.6.30일까지 미정산(미반납)된 기초지자체 사업 기준</li> <li>* 기존 추진이력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만점 적용</li> <li>* (대표)주관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, 해당 공공기관의 정산 미완료 사업과 해당 지역의 정산 미완료 사업 중 큰 값 적용</li> </ul>							
개정 (가점 0 ~ 2)	○ 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						
	배점	0	1	2			
	2024년 상반기 이내 정산 서류 제출	그 외	2022년 사업	2023년 사업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기간연장 여부와 관계없이, '24.06월 이내 주관기관 정산 관련 공문 제출 기준(지역 기준 적용)</li> <li>* 기존 추진이력이 없는 신규 컨소시엄의 경우 평균값 적용</li> <li>* 2023년 사업은 2022년 사업 정산 서류 既 제출한 경우 인정</li> </ul>							

□ (비계량) 계량평가 확대에 따른 비계량 평가 항목 조정(60점 → 50점)

- 비계량 배점 하향으로 기존 평가 항목 배점 조정

기존			개정		
평가 부문	평가항목	배점	평가 부문	평가항목	배점
인프라 (10)	사업 필요성	6	인프라 (10)	사업 필요성	6
	민원, 인·허가사항	4		민원, 인·허가사항	4
주관 기관(10)	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	5	주관 기관(10)	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	5
	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	5		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	5
시공기업 (10)	참여기관(기업) 적정성	5	컨소시엄 구성(5)	컨소시엄 구성(기업) 적정성	5
	참여기관(기업)별 역할 계획	5			
사업추진 (13)	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	4	사업추진 (10)	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	3
	에너지원별 시공계획	4		에너지원별 시공계획	3
	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	5		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	4
컨소시엄 차별성(7)	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	7	컨소시엄 차별성(7)	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	7
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(10)	사후관리 계획	7	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(8)	사후관리 계획	5
	사업완료 시 기대효과	3		사업완료 시 기대효과	3

□ (중요)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주관기관 중심 이행실적 점검

- 사후관리 수행 시 A/S 미이행 지자체 및 시공기업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가능

(예시) A컨소시엄(A지자체, 에너지원별 B기업, C기업, D기업) 내 C기업이 사후관리(A/S 포함) 미이행 시 A지자체와 C기업은 차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참여제한 가능

- 주관기관은 사후관리 수행 중 발생한 A/S처리 및 에너지절감 현황 관리 책임 의무가 있으며, 설문조사 수행(운영단계 문제점 등)시 협조하여야 함(별도안내)

□ (기타) 사업계획서 및 평가용 PPT 자료 분량 조정

- 발표자료 분량 조정으로 배정 시간에 따른 효율적 관리와 핵심 내용 위주 평가 준비로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부담 완화

기존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계획서(50페이지 이내)</li> <li>○ 발표용 PPT(30페이지 이내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</li> <li>○ 평가용 PPT(20페이지 이내, PDF전환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 이후 변경 발생 또는 영상 등은 외장하드 등에 별도 지참 후 평가 당일 제출 및 평가 실시</li> </ul> </li> </ul>

□ (기타) 신재생에너지설비 사업 대상지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 의무화

-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(이행) 여부 및 태양광 설비 상계거래 사전검토 확인서 필수 제출

기존	개정
<p>[별첨1]융복합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 전 고려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계처리 가능여부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 이행 여부 확인</li> </ul>	<p>[별첨1]융복합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청 전 고려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계처리 가능여부(상계거래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[별첨7-3])</li> </ul> </li> <li>○ 공공건물의 설치의무화 대상(이행) 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설치의무화 대상(이행) 관련 지자체 사전검토 확인서 제출[별첨7-2]</li> </ul> </li> </ul>

□ (기타) 기존 미정산 주관기관 참여제한 지속 및 기준 변경 예정

- '20년 사업(이전 사업 포함) 주관기관 → '21년 사업(이전 사업 포함) 주관기관

기존	개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사업 추진기관 중 접수마감일 기준 '20년 사업(이전사업 포함) 미정산 주관기관은 '24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제한</li> <li>* 정상완료 기준은 설치확인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이 아닌 정산금 반납여부임. 미정산 주관기관 명단은 별도 문의 요망</li> <li>* 단,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위원회의 결을 통해 참여제한 여부 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사업 추진지역 중 접수마감일 기준 '21년 사업(이전사업 포함) 미정산 지역은 '25년 사업 참여제한</li> <li>* 정산완료 기준은 설치확인 완료 및 정산서류 제출이 아닌 정산금 반납여부임. 미정산 지역 명단은 별도 문의 요망</li> <li>* 단, 주관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위원회의 결을 통해 참여제한 여부 결정</li> <li>* '26년 수요조사 공고부터 미정산 사업 기준 변경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한은 사업 완료 해의 다음 연도 내 반납(이월 시 다음 연도 내)</li> </ul> </li> </ul>

□ (기타) 지열 에너지원의 그라우팅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

- 주관기관은 ①그라우팅 시공 감리, ②벤토나이트 구매비용, ③주관기관 현장 직접 입회 등(택1)을 통한 적정 시공여부 확인 및 설치확인 시 증빙자료 제출(감리비는 민간 소비자 비용 전가 불가)

□ (기타) 보급사업 비참여기업 참여기준 완화

- 보급사업 비참여기업 에너지원 단독참여 불가 및 컨소시엄 구성 시 원별 시공기업 수 제한 삭제

기존	개정
<p>□ (시공기업 자격) 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우선 자격대상이며, 참여기업 미선정 업체는 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격여부 결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23년 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해당 에너지원에 단독으로 참여 불가, 해당 에너지원의 2023년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공동으로만 참여 가능</li> <li>* 해당 에너지원에 2023년 참여기업이 5개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함</li> <li>* 비참여기업 참여 시 주관기관에서는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를 반드시 징구 및 보관하여야 함</li> <li>* '25년 수요조사 공고부터 컨소시엄 구성 시 에너지원별 2개 초과 시공기업 참여 제한</li> </ul>	<p>□ (시공기업 자격) 2024년 보급사업 참여기업이 자격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, 2024년 보급사업 비참여기업은 <u>평가지표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평가위원회 심의 등 실시</u></li> <li>* 주관기관에서는 보급사업 기간 시공기업에 대한 에너지원별 시공공사등록 및 면허 등록 여부 확인</li> <li>* 비참여기업 참여 시 주관기관에서는 생산물책임보험, <u>자금보증보험증권</u> 가입서류를 반드시 징구 및 보관하여야 함</li> </ul>

□ (기타) 주관기관 사업비 정산 시 정산성 경비 실비정산(별도 안내)

- 국무조정실 전력기반기금 지적사항으로 정산성 경비(4대보험 등) 사후 정산 실시

기존	개정
<p>□ (사업비 정산)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총당하여야 함</li> </ul>	<p>□ (사업비 정산)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정산비용은 컨소시엄 자부담으로 총당하여야 함</li> <li>* <u>정산성 경비(4대보험 등) 사후정산 실시(별도 안내)</u></li> </ul>

□ (기타)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신청기관 부담 완화
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서류(신청개소별)에 대해 사업 선정 이후 설치계획서 등록 시 제출



## 2. 2026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적용 예정사항

- 참여제한 관련 미정산 사업 기준 변경
  -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기한은 사업완료 해의 다음 연도 내 반납(이월 시 다음 연도 내)

## 3. 향후 일정(안) [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]

-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: '24. 3월 초
- 사업계획서 접수 : '24. 3월 초 ~ 6월 중
- 1차 공개평가 : '24. 7월
- 2차 심층 및 총괄평가 : '24. 8월 ~ 9월
- 사업 선정 : '24년 9월 ~ 10월

※ 변경사항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: [kea076@energy.or.kr](mailto:kea076@energy.or.kr)로 송부

\* 별도 양식은 없으며, 유선문의는 가능한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<참고>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평가표 개정(안)

## 1. 평가 지표(안)

평가부문	평가항목		배점	평가기준		
계량 (50)	시공능력 (15)	'24년 참여기업	-	15	'24년 참여기업의 경우 만점(15점) 부여	
		'24년 비 참여기업	기술인력	5	5	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근무경력
			신규고용인력	2	2	신규 고용인력 및 청년 고용 실적
			시공실적	5	5	최근 3년간 신재생 시공기업 시공실적
			신용도	3	3	신재생 설비 시공기업 경영상태
	모니터링능력 (3)	REMS 연동률(%)		3	모니터링업체의 통합모니터링(REMS) 연동률(%)	
	사업 수행능력(22)	사업 변경률		7	'23년 1년 동안 사업변경 신청 비율	
		설치확인 적기 신청		7	이전 3년간 설치확인 신청 실적 평가	
		설치계획서 적기 제출		4	'24년 설치계획서 제출 실적 평가	
		에너지원별 균형		4	"비태양광" 설비 비율	
	지방비자부담 (6)	지방비자부담 비율		6	지방비자부담 비율	
	예산집행률(4)	예산 집행률		4	2024년 사업 보조금 교부비율	
	가·감점 (계량은 최대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)	(가점)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		2	행정인건부 주관 주민자치회와 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	
				1	주민수익창출형 사업 연계(협약서 제출)	
		(가점)BIPV 포함 사업신청		3	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50kW 이상	
		2	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25kW 이상			
		1	BIPV(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) 합산용량 10kW 이상			
(가점)산업단지 입주기업 포함 사업신청		3	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시 가점 부여 및 KEEP+ 지정 또는 RE100 기업 포함 사업 추진 시 추가 가점 부여			
		2				
(가점)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		3	저탄소 인증 모듈 사용 비율 50% 이상 사용시			
		2	저탄소 인증 모듈 사용 비율 30% 이상 사용시			
(가점)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신청		1	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사업 추진 여부			
(가점)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		2	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 가점 부여			
		1				
비계량 (50)	인프라 (10)	사업 필요성		6	지역특성 및 융복합지원사업 필요성	
		민원, 인·허가사항		4	민원 및 관련법규 저촉 여부, 처리방안의 적정성	
	주관기관 (지자체or공공기관) (10)	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		5	중장기 지역에너지 및 신재생 보급률 등 추진현황 및 계획 *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	
		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		5	주관기관의 사업구성 추진내역 및 사업추진 계획 * 동일 지자체 2개 이상의 컨소시엄 구성시 최하점	
	컨소시엄 구성 (5)	컨소시엄(기업) 구성 적정성		5	컨소시엄(기업) 구성 적정성	
	사업추진 (10)	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		3	지역특성을 감안한 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 적정성	
		에너지원별 시공계획		3	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적정성	
		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		4	당해년도 사업 완료를 위한 추진계획의 적정성	
	컨소시엄 차별성(7)	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		7	지역특성을 감안한 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컨소시엄만의 차별화된 사업추진 계획	
	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(8)	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		5	향후 점검계획, 점검방법 및 주기, A/S 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의 구체성	
사업완료 시 기대효과		3	에너지 생산량 및 화석에너지 대체량(toe/년), 지자체 활성화 관련 기대효과 등			
별도가점	(가점)이격거리 가이드라인		0~5	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		
합 계			100			

## 2. 평가지표 신·구 대비표

변경 전				
평가부문		평가항목		배점
계량 (40)	시공능력* (12)	'22년 참여기업	-	12
		'22년 비 참여기업	기술인력	4
			신규고용인력	2
			시공실적	4
			신용도	2
	모니터링능력 (3)	REMS 연동률(%)		3
	사업 수행능력(11)	사업 변경률		6
		사업 완료율		5
	민간자부담(4)	민간자부담 비율		4
	예산집행률(5)	예산 집행률		5
	사업정산(5)	사업비 정산현황		5
	가 감점 (계량은 최대 40점을 초과할 수 없음)	(가점)이격거리 가이드라인		0~3
		(가점)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		1
		(가점)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		2
		(가점)BIPV 포함 사업신청		2
		(가점)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,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		1
		(가점)다중이용시설 포함 사업신청		1
		(가점)지역에너지계획 우수지자체		1
		(가점)전통시장 포함 사업신청		1
(감점) 에너지원		0~2		
비계량 (60)		인프라 (10)	사업 필요성	
	민원, 인·허가사항		4	
	주관기관 (지자체or공 공기관) (10)	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		5
		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		5
	시공기업 (10)	참여기관(기업) 적정성		5
		참여기관(기업)별 역할, 계획		5
	사업추진 (13)	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		4
		에너지원별 시공계획		4
		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		5
	컨소시엄 차별성(7)	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		7
	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(10)	사후관리 계획		7
사업완료 시 기대효과		3		
합 계				100

⇒

변경 후				
평가부문		평가항목		배점
계량 (50)	시공능력 (15)	'24년 참여기업	-	15
		'24년 비 참여기업	기술인력	5
			신규고용인력	2
			시공실적	5
			신용도	3
	모니터링능력 (3)	REMS 연동률(%)		3
	사업 수행능력(22)	사업 변경률		7
		설치확인 적기 신청		7
		설치계획서 적기 제출		4
		에너지원별 균형		4
	지방비자부담 (6)	지방비자부담 비율		6
	예산집행률(4)	예산 집행률		4
	가 감점 (계량은 최대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)	(가점)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창출형		2
		(가점)주민수익창출형		1
		(가점)BIPV 포함 사업신청		3
		(가점)BIPV 포함 사업신청		2
		(가점)산업단지 입주기업 포함 사업신청		1
		(가점)산업단지 입주기업 포함 사업신청		3
		(가점)산업단지 입주기업 포함 사업신청		2
(가점)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		3		
(가점)저탄소 태양광모듈 사용		2		
(가점)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신청		1		
(가점)사회복지시설 포함 사업신청		2		
(가점)사업비 정산 우수 지자체		1		
비계량 (50)	인프라 (10)	사업 필요성		6
		민원, 인·허가사항		4
	주관기관 (지자체or공 공기관) (10)	사업 추진현황 및 중장기 계획		5
		행정 지원내역 및 계획		5
	컨소시엄 구성(5)	컨소시엄(기업) 구성 적정성		5
		컨소시엄(기업) 구성 적정성		5
	사업추진 (10)	에너지원 및 용량 구성		3
		에너지원별 시공계획		3
		당해년도 사업 완료 추진계획		4
	컨소시엄 차별성(7)	사업대상지 밀집도 및 차별성		7
	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(8)	사후관리 모니터링 계획		5
사업완료 시 기대효과		3		
별도 가점	(가점)이격거리 가이드라인		0~5	
합 계				100